KOSHA GUIDE

C - 59 - 2022

- (2) 지붕작업 시 상·하부 동시작업은 금지하여야 하며 다른 작업자 및 일반인들이 작업구역 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가설휀스,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3) 지붕작업 시 발생한 폐기물은 낙하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마대 등에 담아 반출하여야 하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경우에는 KOSHA GUIDE C-26-2017(낙하물방지망 설치 지침)에 따른다.
- (4) 지붕작업 시 자재운반을 위해 크레인 등을 이용할 경우 줄걸이 방법은 KOSHA GUIDE M-186-2015(크레인 달기기구 및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의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)에 따른다.

5.4 기타 사항

- (1) 다음 각 호의 악천후 시 지붕작업으로 인하여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.
- (가)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
- (나)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
- (다)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
- (2) 일일 작업을 마친 후 지붕에는 자재 잔해물, 부속품 등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3) 작업장소 주변에 근접하여 충전전로가 있는 경우 정전작업을 실시하거나 충전 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고 지붕작업을 하여야 한다.
- (4) 전기기계·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KOSHA GUIDE E-106-2011(건설현장의 전기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)에 따른다.
- (5) 지붕위에서 용접이나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에 대비하여 불티 비산방지포와 소화기를 비치하고 지붕위에서의 소화방법, 대피방법 등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.
- (6) 작업 전 관리감독자는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및 안전설비의 이상 유·무를 확인